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2. 조치일 : 2020. 10. 12.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내규「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고위험 고객은 1년, 중·저위험 고객은 3년으로 고객확인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대면 방식으로만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확인 재이행이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대면 방식에 의해서도 고객확인 재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2) 고객 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고객의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채널 위험 등을 반영한 고객 위험평가모형(단일 및 복합평가항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① 단일평가항목에 따라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고위험 고객만 고위험으로 분류되고, 복합위험평가모형에 따른 위험평가결과로는 거주자 중에서 고위험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평가모형이 설계되어 있어 고객 위험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가중치를 정비하는 등 고객 위험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검사착수일(2020.◇.◇.) 현재 고객에 제공하고 있는 여신, 보험, 보관서비스 등의 상품 및 서비스가 고객 위험평가모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고객 위험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가 반영되도록 고객 위험평가모형을 개선하시기 바람